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8항 중 “재산관리과”를 “재무과”로 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외국인투자기업등의 범위)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등”이라 한다)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의2호,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.

제20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을 각각 “외국인투자기업등”으로 하고, 동조제3호 중 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을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7호 중 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을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로 하고,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4항 중 “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”을 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”으로 한다.

8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.

제22조의2 중 “영 제100조의3제2호”를 “영 제100조의3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23조제8항 중 “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”을 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의3 본문 중 “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”을 “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”으로 하고, 제1호사목·제2호사목 및 제3호사목 중 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을 각각 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”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.

- 1. 전액 감면 :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
- 2. 75퍼센트 감면 :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
- 3. 50퍼센트 감면 :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

제28조제1항의 단서 중 “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”를 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본문중 “16,103명”을 “16,121명”으로 하고, 안 동조 제4호중 “214명”을 “232명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“15,984명”을 “16,121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10,339명”을 “10,450명”으로 하며, 동조제4호중 “206명”을 “232명”으로 한다.